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로서 효 사상은 유사 이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에는 효행의 대표적 사례인 〈심청전〉의 배경이 된 도시로 예로부터 효자·효녀·효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효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 가는 도시임.
- 효 사상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통시적(通時的), 종교·종파를 초월하는 통교적(通敎的), 어떤 이념도 초월하는 통념적(通念的) 가치를 지님.
-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서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효 실천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른 교육, 문화, 운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됨.

2. 주요내용

- 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 진흥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효문화 장려를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장려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청소년들의 효 의식 고취와 효행장려를 위한 효의 날 제정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장려 분위기 조성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경로효친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효문화 진흥 및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15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시의회문교사회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3,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효행 장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7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효행 지원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호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